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 3. 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2.2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2.26.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6.3.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 현 기

가. 제안이유

「장애아동 및 지역주민에게 의료재활·직업재활·교육·체육·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의 목적

-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우리구와 재단법인 푸르메가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립 추진한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이 2015. 12. 30. 준공됨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 위탁이 요구됨.
- 본 사업시설(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린이도서관)의 민간 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의료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민간위탁의 내용

- 시설현황
 - 위 치 :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상암동 1738)
 - 면 적 : 3,212.9㎡
 - 규 모 : 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18,571.52㎡
 - 사업기간 : 2010. 12. ~ 2016. 12. (2015. 12. 30. 준공)
 - 주요시설 :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린이도서관
- 민간위탁 범위 :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위탁체결일로부터 3년
 - 「공유재산법」 제21조에 의거 사업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푸르메재단에서 최장 20년 무상사용함(위탁계약은 무상사용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자동 연장)

※ 2014.1.29. : 재단법인 푸르메와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운영」 실시협약 체결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16. 2월중
- 위탁계약 체결 : 2016. 3월
- 물품구입 및 운영준비 : 2016. 3~4월
-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개관식 : 2016. 4월말 예정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장애아동 및 지역주민에게 의료재활·직업재활·교육·체육·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암2지구 내에 건립추진 중인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어린이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은 상암택지개발지구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마포구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마포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에서 의료재활시설과 고용창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민간자본 등 포함 총 465억원임.
- 2014년1월 마포구는 재단법인 푸르메와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의거, 본 사업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후 푸르메재단에서 최장 20년 무상사용하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